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2.12.8.(목) 조간	배포	2022.12.8.(목)		
담당부서	금융상품심사분석국 심사분석총괄팀 보장상품심사팀	책임자	부국장	정관성	(02-3145-8230)
		담당자	수석조사역	박민정	(02-3145-8231)
		책임자	팀 장	주요한	(02-3145-8240)
		담당자	조사역	김다연	(02-3145-8243)

[금융꿀팁 200선] <137>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
-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하여 보도참고자료와 파인(FINE)을 통해 안내하고자 함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
세제 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5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
피해 예방  고령자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합니다.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I. 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 <붙임 1>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 **(적용 대상)**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 **(할인조건 및 할인율)** 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②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 할인)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2.10월 기준)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 ☐ **(개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 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22.8.1.시행)
- ☐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
- ☐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 ▶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애, 입원, 수술 등
- ▶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 ▶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 예) 알츠하이머진단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가입연령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90세만기, 100세만기, 종신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30세 ~ Min(75, (85 - 납입기간))세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22.10월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 ※ 향후 참여 보험회사 확대 도모

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

- **(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 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 * <붙임 2> 보험회사별 서민 나눔 특약 현황
- **(대상 자동차)**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보험회사별 차이)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3) 피보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 제외**

✓유의사항

-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II. 세제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 **(개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4)이 되는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등(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납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참고>

일반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후 세액공제액 비교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및 적용한도(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 * 과세기간 중 보장성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여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으로 인정

사례 1

◇ **非장애인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1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

- **암보험** 1건(연납 보험료 80만원), 다른 보장성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전환 전>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 : 105,600원 (= 80만원 × 13.2%)

<전환 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세액공제액 : 132,000원 (= 80만원 × 16.5%)

⇒ 세액공제액 **26,400원** (= 132,000원 - 105,600원) 증가

<전환 전>		<전환 후>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암보험 80만원	-	-	암보험 80만원
세액 공제액 105,600원 (=80만원 × 13.2%)	-	-	132,000원 (=80만원 × 16.5%)

사례 2

◇ **장애인 B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건의 보장성보험(총 연납 보험료 250만원)에 가입

- **종신보험** 1건(연납 보험료 140만원), **자동차보험** 1건(연납 보험료 110만원)

<전환 전>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 : 132,000원 (=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 × 13.2%)

<전환 후> 자동차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종신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유지)후 세액공제액 :
297,000원 (=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 × 13.2% + 장애인전용보험 한도 100만원 × 16.5%)

⇒ 세액공제액 **165,000원** (= 297,000원 - 132,000원) 증가

<전환 전>		<전환 후>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종신 140만원 자동차 110만원	-	종신 140만원 자동차 110만원	
세액 공제액 132,000원 (= 한도 100만원 × 13.2%)	0원	132,000원 (= 한도 100만원 × 13.2%)	165,000원 (= 한도 100만원 × 16.5%)
		총 합계 297,000원 (132,000원 + 165,000원)	

❗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과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전환할 필요

5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

- ☐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 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 ☐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상 수급자 등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 ☐ (가입기간) '22.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 가입기간 연장여부는 추후 확인 필요

<참고>

일반 증권저축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배당수익 비교

사 례

- ◇ 67세 투자자 C씨는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원 투자(과세율 15.4%)

- 1)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시 배당수익 : 211.5만원(250만원 - 250만원 × 15.4%)
- 2)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투자시 배당수익 : 250만원(250만원 - 250만원 × 0%)

*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

⇒ 비과세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 38.5만원(= 250만원 - 211.5만원) 증가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님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 필요

Ⅲ. 피해예방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합니다

- ☐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 ☐ (적용 대상)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 ☐ (이용 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② 알림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및 신청 → ③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동의* →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카드론·현금서비스 지정인 알림내용(예시)

카드론	현금서비스
- 이용자(신청인) ◇◇◇	- 이용자(신청인) ◇◇◇
- 대출금액 xxx원	- 이용금액 xxx원
- 이용일자 2022년 xx월 xx일	- 이용일자 2022년 xx월 xx일
- 대출기간 xx개월	
(만기일 202x년 xx월 xx일)	
- 상환방식 원금균등	
- 이자율 xx.x%	
- 연체이자율 xx.x%	

※ 알림내용은 카드사별로 차이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

- ☐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

•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 특약 포함)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이내 친족 등

• 자동차보험

- (적용 대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질병·상해 보험 등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상품별 차이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 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제외)

○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숙려기간제도 및 지정인 알림서비스 적용 대상 금융투자상품

구 분	금융투자상품
숙려기간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 계약, 조건부 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금소법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 상기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및 일임계약도 포함
지정인 알림서비스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
-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

*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상이

일반보험과 고령자 가입 TM 보험 청약철회 기간 비교(예시)



고령자 가입 TM보험 개별 약관 청약철회 조항(예시)

- ▶ 제 0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보험)

- (철회 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1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회사명	특약명	주요내용
삼성화재	실버(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 개인용 차량만 가능 (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 등도 가능) -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 가입 -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일부 담보 할인 제외) -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상이 등
현대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DB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KB손보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한화손보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эм지손보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흥국화재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하나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캐롯손보	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	

붙임2
보험회사별 서민 나눔 특약 현황

회사명	특약명	주요내용
삼성화재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회사별로 차종(개인용, 이륜차 등) 및 판매 채널(TM CM 및 대면)에 따라 가입조건과 할인율이 차이
현대해상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DB손보	프로미하트(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KB손보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 I	
한화손보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희망나눔(서민우대) 특약	
эм지손보	서민형 나눔 할인 특별약관	
흥국화재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하나손보	나눔 특별약관	
악사손보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